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필수 감시지역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 조정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640호)

〈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 김용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193호)

2025. 6.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 목 차 】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학교 건물 내외 필수 감시지역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조정훈의원안) ..	4
2. 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김용태의원안)	11

I. 제안경위

【조정훈의원안】

1. 발 의 자 : 조정훈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3. 4.
3. 회부연월일 : 2025. 3. 5.

【김용태의원안】

1. 발 의 자 : 김용태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3. 20.
3. 회부연월일 : 2025. 3.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정훈의원안】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학교주변 순찰·감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학생의 안전대책을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전 초등학생 사망이 발생함에 따라,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 발생이 큰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교내 중요 장소에 영상 정보처리기기 설치와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남아 교육·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 필수 감시지역 및 장소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방과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학생의 안전대책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8).

【김용태의원안】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등 세부기준수립,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학교 주변 순찰·감시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신고 당시 피해 학생에 대한 경찰 수색에 어려움이 나타나는 등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위해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 간 연계를 강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교육감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 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8).

Ⅲ. 검토의견

1. 학교 건물 내외 필수 감시지역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조정훈의원안)

개정안은 학교의 장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출입문, 복도, 계단 등 학교 내외 필수 감시지역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관한 사항 및 방과후 교육 및 돌봄 활동 참여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8).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① (생략)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영상정보처리기기</u> 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u>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 필수 감시지역 및 장소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u>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u>방과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u>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u>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학생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현행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8)¹⁾에서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등의 세부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학교주변에 대한 순찰·감시 활동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학교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²⁾의 설치와 관련하여 학교의 장은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³⁾, 학교의 장이 학교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시설에 CCTV를 설치·관리하고 있음.

참고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⁴⁾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공개된

1)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①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학교담장을 포함한다)을 설치·변경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등의 세부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학교주변에 대한 순찰·감시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의2(학생의 안전대책 등) 학교의 장이 법 제30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을 수립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소에서 CCTV 설치는 제한되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거나 범죄 예방, 시설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음.

현행법 상 학교시설 및 학교 주변 아동보호구역 등의 장소에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등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바, 이에 근거하여 학교 내외에 CCTV를 설치할 수 있음.

<학교시설 및 학교 주변지역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법 률	조 문	목 적	설 치장소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 예방	학교시설 (학교담장 포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⁵⁾	제20조의7	학교폭력 예방	학교 내외
아동복지법 ⁶⁾	제32조	유괴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 보호	아동보호구역 (초등학교, 특수학교 시설부지 외곽경계선 반경 500미터 이내 일정구역)
학교체육 진흥법 ⁷⁾	제7조	학생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	실내외 훈련장, 학생선수기숙사, 훈련시설의 출입문·복도·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 훈련시설의 식당 및 강당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⁸⁾	제8조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등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5)「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7(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

교육부 자료(2025. 2. 11. 기준)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설치된 CCTV는 36.6만 대인 것으로 나타남. 이 가운데 실내 설치 건수는 18.5만 대로, 실내 설치 건수 중 복도 및 계단은 11.9만 대, 현관 등 로비는 2.1만 대, 돌봄교실 주변은 1,967대, 교실은 916대, 시청각실은 688대가 설치되어 있음⁹⁾.

그런데 최근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발생¹⁰⁾으로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 관리강화 필요성 및 방과 후 교육·돌봄 활동 참여 학생의 귀가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¹¹⁾.

처리기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관제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 관제하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통합 관제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통하여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④ 통합 관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한다.

⑤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아동복지법」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7) 「학교체육진흥법」

제7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③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학교 체육시설 관련 주요 지점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8)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학생의 안전 확보) ③ 운영관리자는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④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대상구역, 시설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⑤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9) <학교시설 CCTV 설치 현황> 참고, 10페이지

10) 2025.2.10.(월) 16:30~017:30경, 늘봄학교(방과후 돌봄) 참여 학생 학교 내 피살사건 발생

현행법 상 학교 내 CCTV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시행토록 하고 있어 학교별로 CCTV 설치 사례가 상이하고, 학생 이동이 많은 출입문, 복도, 계단 등 학교 내에 CCTV 설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학생의 안전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또한 방과 후 교육·돌봄 활동(늘봄학교) 확대¹²⁾에 따라 방과 후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남아 교육·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귀가 안전 관리 강화 방안 마련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학교 CCTV 설치 장소를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 필수 감시지역 및 장소 등’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방과 후 교육 및 돌봄 활동 참여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학생의 안전대책에 포함하는 한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학교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11)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 질의(2025.2.18.) 등

12) 교육부 <2025 늘봄학교 시행방안 요약> 발췌

(도입배경) 학부모의 돌봄공백을 해소하고 아이 한명 한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돌봄체계 마련 필요

(늘봄학교도입) 기존의 초등방과후·돌봄을 통합·개선한 정규수업의 종합교육운영체제인 늘봄학교도입

(경과) 2024년에는 돌봄공백에 취약한 초1을 우선대상으로 전면도입, 2025년 초1~2, 2026년초등 전학년으로 지원대상 연차적 확대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교육청 및 교원단체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관계기관 의견>

【교육부】

- 학내 안전을 위하여 필수지역 내 CCTV 설치 및 방과후 교육·돌봄 참여학생 안전 대책 마련·시행에 대한 입법 필요성에 공감함.

【교육청】

- (서울·광주·경기·강원·충남·전남) : 신중검토
 - 필수 감시지역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교실 내 CCTV 설치 우려
 - 교실 내 CCTV 설치 가능 여부는 인권위 권고('12.)를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 및 사회적 합의 선행 필요
 - CCTV 설치를 통한 범죄예방 효과가 명확하지 않으며, 자유로운 교육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기에 신중검토 필요
- (대구) 수정의견
 - 늘봄학교 시행으로 초등학교에서 '방과후'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방과후 학교에 남아'를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수정

【교원단체】

- (교사노조연맹) 무분별한 CCTV 설치로 학교구성원 인권 침해 및 학내 분쟁 발생 우려
- (전교조) 학교 건물 내외 CCTV 설치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은 학생, 교원의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반대

<학교시설 CCTV 설치 현황>

(2025. 2. 11. 기준)

학교 급	학교수	설치장소																			
		실내											실외								총계
		교 실	급식실	보건 실	사형 각실	강당/ 체육관	복도/ 계단	로비/ 현관	특별실	돌봄실 주변	기타	소계	교문	건물 출입구	주차장	옥상	운동장	담장 주변	기타	소계	
초	6,284	233	887	55	100	2,458	16,885	8,889	795	1,767	4,939	37,008	14,014	18,569	14,833	1,960	15,054	9,140	20,541	94,111	131,119
중	3,286	213	1,157	74	262	2,024	45,506	5,881	1,980	84	5,920	63,101	5,590	8,004	6,895	1,163	6,451	5,416	9,305	42,824	105,925
고	2,380	407	1,588	74	314	2,121	54,564	6,227	3,467	60	12,661	81,483	5,061	7,750	5,689	1,577	4,296	5,777	10,506	40,656	122,139
특	196	63	80	8	12	140	2,356	438	132	56	557	3,842	373	493	580	97	327	326	654	2,850	6,692
계	12,146	916	3,712	211	688	6,743	119,311	21,435	6,374	1,967	24,077	185,434	25,038	34,816	27,997	4,797	26,128	20,659	41,006	180,441	365,875

(자료: 교육부)

2.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김용태의원안)

개정안은 교육감이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 관련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생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8).

현행	개정안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①·② (생략) <u><신설></u>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교육감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제하는 시설(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5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관제센터는 통합관제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④ <u>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항 및 제3항 따른 학생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u><신설></u>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학생의 안전대책 및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 -----.
--	---

현행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8)¹³⁾에서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등의 세부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학교주변에 대한 순찰·감시 활동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학교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¹⁴⁾의 설치와 관련하여 학교의 장은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¹⁵⁾, 학교의 장이 학교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시설에

13)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①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학교담장을 포함한다)을 설치·변경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등의 세부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학교주변에 대한 순찰·감시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1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의2(학생의 안전대책 등) 학교의 장이 법 제30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을 수립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관리하고 있음¹⁶⁾.

최근 대전 초등학교서 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¹⁷⁾ 신고 당시 피해 학생에 대한 경찰 수색에 어려움이 나타나는 등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의 관리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특히 학교 내 CCTV 통합관제를 통한 학교 안전 관리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교육감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 센터에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제로 안전 사각지대 관리를 강화하여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제에 관하여는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7)에서 그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 안에서도 운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해당 법률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내외에 설치된

16) <학교시설 CCTV 설치 현황> 참고, 10페이지

17) 2025.2.10.(월) 16:30~017:30경, 늘봄학교(방과후 돌봄) 참여 학생 학교 내 피살사건 발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⁸⁾.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¹⁹⁾에서 관내 학교에 설치된 CCTV를 연계하여 통합관제하고 있음. 전국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설치된 CCTV는 365,875대인데, 그 중 8.3%에 해당되는 30,221대가 통합관제 중이고, 대부분 학교담장, 교문, 주차장 등 학교 외부 CCTV에 한정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남.

<학교시설 CCTV 설치 및 통합관제 현황>

(2025.2.11.기준)

학교급	CCTV 설치 수(대)	통합관제 CCTV 수(대)	통합관제 CCTV 비율(%)
초	131,119	25,872	19.7
중	105,925	3,280	3.1
고	122,139	776	0.6
특	6,692	293	4.4
소계	365,875	30,221	8.3

(자료: 교육부)

학교 내 CCTV의 통합관제와 관련하여서는 개인정보의 침해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교직원 등 구성원들의 사회적 협의 및 의견

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7(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관제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 관제하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통합 관제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통하여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④ 통합 관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한다.

⑤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 2025.6월 기준으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3개 시도에서 통합관제 운영

수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통합관제 확대 시 이에 필요한 시설구축 및 관제인력 등의 재정 소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교육청 및 교원단체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관계기관 의견>

【교육부】

- 학생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관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

【교육청】

○ (서울·광주·경기 등 학교)

- 현재 지자체 관제센터 연계는 지자체 협조가 어렵고 관제인력도 부족하여 학교 사고 예방에 대한 실효성이 매우 낮음(서울 기준, 초등학교 15,143대 중 197대만 연계, 약 1.3%)
- 학교 내 교육활동 등을 교육청이나 외부기관에 24시간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이 매우 큼
- CCTV 통합관제는 설치비, 인력, 관리비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나 학교 사고 예방 효과도 낮고 잦은 연계 오류, 학교구성원의 부담 등을 이유로 관제 사업을 운영했다가 종료한 시·도도 있음

【교원단체】

- (교사노조연맹) 무분별한 CCTV 설치로 학교구성원 인권 침해 및 학내 분쟁 발생 우려

문 의 처

02)6788-5185